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90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비용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
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비용
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9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비용 감면 등) ① ~ ② (생략)</p> <p><u><신 설></u></p> <p>③ (생략)</p> | <p>제9조(비용 감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로페이 이용자 10% 감면 시 연간 2백만원 소요

※ 연간 징수액 2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주 윤 극 (02-2133-7362)